

Vol. 125 (February 2018)

인터넷 법제 동향

Laws and Policy Trends of the Internet



CONTENTS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1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2. 21.)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2. 21.)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2. 21.)	
<국회 제출 법률안>	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제안)	
•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정태욱의원 대표발의, 2018. 2. 2. 제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제안)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제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2018. 2. 1. 제안)	
•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 제정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2018. 2. 22. 제안)	
•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제안)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2018. 2. 1. 제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제안)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제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제안)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49
- 하원, 사이버외교법안 가결 (2018. 1. 17.)
 - 뉴저지 주지사, 망중립성 유지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2018. 2. 5.)
 - 증권거래위원회, 사이버침해사고 및 취약성 공개 지침 승인 (2018. 2. 21.)
- <영국> 55
- 정부, 디지털 헌장 발표 (2018. 1. 25.)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NIS 지침 의견 수렴 최종 보고서 발표 (2018. 1. 2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2. 21.)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이유

- 영유아의 스마트폰을 통한 과도한 인터넷 이용이 영유아의 언어능력, 신체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등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강화·내실화 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실시 횟수를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제30조의8제2항, 제30조의8제3항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실시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30조의8제4항 신설)
-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제32조제1항)
-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함(제32조제3항 후단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 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음(제32조의2)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2. 21.)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이유

- 현행법은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고,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뇌물 수수 등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주요내용

-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직무 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해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제25조제6항)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2. 21.)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이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제4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위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홈페이지 게시와 별도로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전화 등의 개별적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 교육, 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 규정에 불과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의 불법정보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안 제73조 제3호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검색내용·검색순위 등 정보검색서비스의 정보검색결과가 이용자 및 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라 함)는 정보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광고와 정보검색결과를 구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임

▶ 주요내용

-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여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44조의8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한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정액 과징금 10억원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 및 제64조의4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보듯이 연매출액이 수천 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4,350만원에 불과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본래 과징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 기반 과징금의 상한을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을 억제하고 이용자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 훼손죄로 고소당하는 등 사회적으로 악용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삭제)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정태욱의원 대표발의, 2018. 2.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한창이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과열이 나타나고 있고, 사기 및 거래업체에 대한 해킹 사고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 주요내용

- 가상화폐거래업 또는 가상화폐계좌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가상화폐거래업자 및 가상화폐계좌관리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
- 가상화폐거래업자 및 가상화폐계좌관리업자가 가상화폐거래기록 등 모든 업무상 기록을 생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함(안 제6조)
- 가상화폐업자의 실명확인 의무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거래금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가상화폐업자는 가상화폐거래 및 가상화폐계좌관리 등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5조)
- 가상화폐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화폐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화폐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가상화폐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를 설립하고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를 행하도록 함(안 제6장)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 지도 및 측량용 사진 등 기본측량 데이터는 자율주행자동차나 가상현실 기술 상용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4차산업혁명의 발판이 되는 기초자료에 해당함
- 그러나 이러한 기본측량 데이터에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가 정기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주요내용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검증하도록 하여 기본측량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을 재산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 정부 당국도 비이성적인 투기를 근절하고, 가상통화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넣음으로써 바람직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실명제 도입 등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투자 목적의 가상통화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가상통화를 현금,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과 같이 재산의 일부로서 봐야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가상통화가 결제수단 및 투자자산의 일종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과정임

▶ 주요내용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시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 주요내용

-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자원들의 융합을 기반으로 정보화가 고도화되거나 고도화될 수 있는 것을 지능정보화로 정의함(안 제2조)
-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지능정보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8조)
- 지능정보화의 심화 등에 따른 일자리·노동환경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5조·제56조)
- 정보처리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있어서의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 및 정보보호시스템 기준 고시를 마련함(안 제57조·제58조)
-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이용자의 평온한 사생활 보장을 위한 사생활 보호 설계 제도를 도입함(안 제60조·제61조)
-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책임성·통제성·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2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을 신고하거나 관련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하고 이 때 신고자의 성명, 주소 등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등을 하도록 하되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런데 공인전자서명은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세기본법」에서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중 공인전자서명만을 강제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4항제2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함

▶ 주요내용

-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구체화하여,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한 새로운 근로부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3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이유

- 스마트 팜 사업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기술집약형 첨단농업 육성과 농업·농촌·식품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지원·육성의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주요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하여 생산의 정밀화, 유통의 지능화, 경영의 선진화 등을 창출하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36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 핀테크 발달에 힘입어 P2P 대출, 대출형 클라우드 펀딩 등 온라인대출중개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P2P 금융중개업자들의 불안전판매,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 대출, 대규모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 등에 대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온라인대출 및 온라인대출중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의 대출거래 행위 및 이를 중개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1호의2 및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운전자가 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운전자의 조작 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에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또한 현재의 자율주행기능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운전 의무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자율주행기능 사용 운전자에게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와 함께 ‘작동시킴’ 의무를 부과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의2 및 제18호의 3, 제48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0년이면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2020년대 후반 ~ 2030년대가 되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주요내용

- 현실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정의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8호의2 및 제18호의3 신설)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함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보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과적 차량 등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운행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인 장비를 통한 적재량 측정 및 정밀측정 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에 따른 운행제한 준수 관리 의무 및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 대상 범위가 협소하여 위반에 따른 책임확보가 곤란하므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현행법에 도로관리청의 무인 적재량 측정장비의 설치·운영 및 추가 정밀측정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에 대한 관리의무를 차량소유자(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차량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도 부과함(안 제77조제2항 개정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거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나 차량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 도로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책임확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 다양한 상품을 소량으로 자주 주문하게 되면서 개별 물류기업이 물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나 조직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짐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신속적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이용하여 물류시설·장비·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화주기업에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클라우드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물류기업의 물류공동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클라우드컴퓨팅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물류공동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제57조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법원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한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 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만을 서명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방식에 포함시켜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안 제2조제3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뉴스 매개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런데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등은 매년 방송광고 또는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여 방송통신의 진흥에 기여하는 반면,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는 미비한 상황임

▶ 주요내용

-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1항제16호 신설 등)
- ※ 이 법률안은 김경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과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법적 성격에 따라 법인인 경우는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개인은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관공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 신청서면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함
-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의 방식을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까닭에 신청 당사자들이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부담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등기신청을 할 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증명서를 통한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방식을 서명의 방식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상표권 등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심판조서나 심결문 등에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오늘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전자상거래 및 각종 신청서, 공문서 등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자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임
-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종이문서로 인한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보관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주요내용

- 상표권 등에 관한 심판조서나 심결문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141조제5항 및 제149조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2018. 2. 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핀테크(FinTech)는 모바일결제, 해외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미 각광받고 있으며, 이런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전자금융거래를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2016년 12월에 기 신설된 바 있음
- 그러나, 아직도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현대화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의 도입·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은 실정임

▶ 주요내용

- 특화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에 근거를 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800만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9조제4호)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영업을 영위하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호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 제정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2018. 2. 2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소프트웨어에 대한 활용성·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복잡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오류 및 취약점 발생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항공, 철도, 원자력 등 주요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예상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주요내용

- 정보통신기술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를 절취, 훼손 또는 위·변조 하는 등의 위해를 가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교란·마비·파괴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침해”로, 침해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아니하고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회적·경제적 혼란이 발생한 상태를 “사고”로, 소프트웨어 본래의 목적에 따른 정상적인 운용 가능성이 확보된 상태를 “안전”으로 정의함(안 제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해당 소프트웨어의 보호·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그 원인과 피해내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 정부가 암호통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시장을 규제하려 나서면서 암호통화 시장의 급등락을 거듭 초래하며 시장혼란만 심화시키고 있음
- 게다가 관련 법적 근거가 전무해, 이용자를 보호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암호통화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발전의 산물로 기존의 화폐, 증권, 외환, 상품 등의 개념 및 성격과 상이해, 기존 법의 틀 내에 포함해 규율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기존 법의 틀에 포함해 규율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가능성이 될 암호통화 기술혁신의 태동을 저해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암호통화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5조)
- 암호통화거래업자는 암호통화예치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 암호통화의 매매등과 관련한 시세조종행위 및 자금세탁행위를 금지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암호통화이용자에 대하여 매매권유 등을 하는 경우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매매·중개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 정부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7년 8월 29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업을 규제하고 있으나,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 대출과 연계하여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관한 규율만을 담고 있어 P2P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 못함
-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이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규범력에 한계가 있음
- 또한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을 통한 단일 대주와 다수 차입자간의 대부행위에 관한 규율체계이므로, 다수의 대주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P2P대출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 주요내용

-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이용약관, 온라인 대주 및 온라인 차주에 대한 온라인 대출계약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처리 원칙 등과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10조)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차주와 온라인 대주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안 제16조)
-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출거래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2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서명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런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하며,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 규정은 이미 지난 2015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음

▶ 주요내용

-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2018. 2. 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再診患者)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하여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對面) 진료를 함께 하도록 하여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함
-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안전운행요건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등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29조의4·제29조의5 신설 등)
 -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 2장 이상 부착하여야 함
 - 또한, 자율주행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 기술, 비상 시 원격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조종할 수 있는 통신 및 제어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야 함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자율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0년이면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2020년대 후반~2030년대가 되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에 앞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당 기간 공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운용 단계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 논란 등과 관련하여 인간의 개입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략적 정의와 임시운행 허가 근거만 존재하고 있어 시의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 인간의 개입 여부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세분화하여 정의함으로써 개발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사와 차량 소유자 등 행위 주체 사이의 형사법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토록 예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지속적인 운전자의 주시를 필요로 하는 등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함
 -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함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자율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함
-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의 규정이 부재한 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발사,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5조의4 신설, 제6조제1항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주문·결제 및 각종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KIOSK)가 공공장소, 식당, 공항, 철도, 지하철, 쇼핑몰 등 유동인구가 많고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KIOSK의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거나 일부 신체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등 비장애인 기준으로 제작·설치 및 운용되고 있어 KIOSK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 주요내용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자동화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인터넷 포털은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특히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기사 배열 영향력 행사·검색어 순위 조작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면서, 언론의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 주요내용

- 정보의 분류 및 검색 기능을 바탕으로 정보의 처리·제공·매개 및 전자우편,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역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15호 신설)
-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하여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제도를 구축함(안 제4조의3 신설)
-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는 언론사가 위탁하는 기사 외에는 기사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의5제1항 신설)
- 일정 매출액 이상인 주요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언론사가 위탁한 기사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기사광고 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인터넷 광고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의5제2항 신설)
- 주요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언론 기사의 게재·매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광고 등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여 정리하도록 함(안 제22조의5제3항 신설)
- 주요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언론사가 위탁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배열원칙에 의하고, 배열원칙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의6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Digital 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이들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공정경쟁 환경의 훼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체계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
 - 특히,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은 국내의 인터넷 동영상 시장, 앱 마켓, 검색 시장, 소셜 미디어 시장 등을 이미 장악하였거나 빠르게 잠식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세액 납부, 국내 매출액 공개 등 이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 유럽연합에서도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임
- 국내 대규모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글로벌 인터넷기업 간의 역차별 이슈 해소와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집행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주요내용

-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는 국내에 지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본 지정대리인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들을 국외사업자를 대리하여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22조제4항 제3호, 제22조의5,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
- 이용자 피해예방, 이용자 불만사항 즉시 처리, 이용자 보호 평가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국외 사업자에게도 확대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전기통신사업으로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은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의 경우 허가 대상으로 하고 비금융업무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등록 대상 업종의 경우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은 전업 전자금융업자를 상정하여 자본금, 재무전성 기준 등 등록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설비투자 비중이 높아 대규모 고정자산을 보유한 통신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겸영하려는 경우에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주요내용

-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등록 세부요건을 합리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업종의 자본금 요건의 하한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적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31조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와 무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최신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에 기반하여 다양한 인증 방식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하도록 전자서명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전자무역문서 보관·증명 등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할 때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와의 충돌을 의식하여 그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청약철회기간 산정 시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안 제17조제7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전자어음의 서명방식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서명만을 「어음법」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 방식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3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 법률은 정당 대의기관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없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ong)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방식이 아니라 휴대폰 등 개인정보를 통해 고유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정당 대의기관의 결의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음
- 그러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간편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별 고유 주소를 통한 접속, 휴대폰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본인 인증 및 이용기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정보의 추가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암호화통신을 이용한 투표값의 전송, 투표종료 7일 후 투표데이터의 자동 삭제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대리 투표, 이중투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임

▶ 주요내용

- 정당 대의기관의 결의 방법의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 시스템(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선거 및 투표에 대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당원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당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전자서명 방식에 있어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허용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 전자서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 해외 주요 국가와 선도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반기술(지능정보기술)의 파괴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의 경우 주로 ICT 인프라 부분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보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조세지원 측면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포함한 신성장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를 경감해 주고 있으나 그 혜택이 제한적임

▶ 주요내용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과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안 제104조의30제1항 및 제2항 신설)
-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은 9%, 그 외에는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04조의30제3항 및 제4항 신설)
-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2년간 그 인건비의 10%와 사회보험료의 100%를, 중견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5%와 사회보험료의 50%를 공제함(안 제104조의30제5항 및 제6항 신설)
-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취업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5년간 연도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80%를 감면함(안 제104조의30제7항 및 제8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 4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융복합 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을 기업으로 유입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주요내용

- 첨단융복합기술을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자체적 사고와 판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거나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고도로 융복합된 기술, 프로그램 또는 체계로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스마트기기, IT융합, 로봇 등 일정 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 첨단융복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근로자 채용 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
- 첨단융복합기술 인력양성기관에서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과정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한 창업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5호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특허권 등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결정문이나 심판조서 등에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오늘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전자상거래 및 각종 신청서, 공문서 등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전자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음
-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종이문서로 인한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보관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주요내용

- 특허에 관한 결정문 또는 심판조서 등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제1항, 제132조의14제1항, 제154조제6항 및 제162조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블랙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컴퓨터의 저장장치를 해당 법관의 동의 없이 복사·보관하는 일이 발생함
- 이에 대해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공용 컴퓨터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이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침해 및 「형법」상 비밀침해 조항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공무소에 속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16조제3항 신설 및 안 제318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블랙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컴퓨터의 저장장치를 해당 법관의 동의 없이 복사·보관하는 일이 발생함
- 이에 대해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공용 컴퓨터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본인과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1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미국 하원, 사이버외교법안 가결 (2018. 1. 17.)

국무부 내에 사이버 정책을 전담할 사이버현안실의 신설을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에게 외국과 사이버 정책 관련 행정협정 체결을 권고하는 《사이버외교법안》이 하원을 통과함 (2018. 1. 17.)

▶ 개요

- 2017년 9월 에드워드 로이스(Edward Royce)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외교법안》(Cyber Diplomacy Act(HB3776))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전달됨
 - 국무부 내에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다른 국가들과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현안실(Office of Cyber Issues)을 설치하며, 대통령에게 미국의 국제 사이버 정책을 지지하는 행정협정을 외국과 체결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017년 9월 렉스 킬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 사이버보안조정실을 경제비즈니스국으로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양당에서 국무부가 사이버 이슈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법안임
- 국회의 요구에 대응해, 2월 6일, 렉스 킬러슨 국무장관은 국무부 산하에 사이버 정책을 전담할 '사이버공간·디지털경제국(Bureau for Cyberspace and the Digital Economy)' 신설 계획안을 담은 서한을 발송함

▶ 주요내용

- 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하며, 사이버 외교정책을 통해 다음의 목표를 추진해야 함
 - 대규모 DDoS 공격¹⁾, 주요기반시설 침해사고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이버공간 위협을 완화함
 - 미국과 사이버정책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협력함
 - 사이버 공간에서 널리 인정되는 국가 간 규범²⁾을 보장하고 시행함

1) 수십 대에서 많게는 수백만 대의 PC를 원격 조정해 특정 웹사이트에 동시 접속시켜 단시간 내 과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 국무부 산하에 사이버 외교정책을 전담할 사이버현안실을 설립하며, 대사급 지위를 갖는 사이버현안실장³⁾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지명함
 - 사이버현안실의 임무는 국제 사이버안보, 인터넷 접속, 인터넷 자유, 디지털 경제, 사이버 범죄 등과 관련된 국무부의 사이버 외교정책 전반을 관할하고, 개방적이고 안전한 ICT 인프라를 국제적으로 견인하는 것임
 - 또한 사이버 테러위험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사이버 이슈와 관련해 국무부와 여타 기관 간 조정을 담당하고 공공과 민간 분야의 가교 역할을 함
- 대통령에게 미국의 국제 사이버 정책을 지지하는 행정협정을 외국과 체결할 것을 권고하고, 협정체결 후 5일 이내에 하원 외무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원회에 협정문서와 함께 협정의 목적 및 시행 방안을 전달하여야 함
 - 국회에 협정문서를 전달한 후 7년 간(또는 협정이 중단될 때까지) 대통령은 매년 하원 외무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원회에 해당 협정의 현황을 보고해야 함
 - 보고서에는 양국의 협정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와 협정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시사점

- 법안 통과 시, 국무부에 사이버 정책 전담부서가 재설립됨에 따라, 국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됨

※ Reference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3776/text>

<https://homelandprepnews.com/stories/26409-house-approves-bill-strengthen-us-cybersecurity-diplomacy/>

<http://thehill.com/policy/cybersecurity/372573-tillerson-proposes-creating-bureau-to-focus-on-cyber-issues-digital>

2) 국가 간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것,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ICT 활용 행위를 방지할 것, 타국의 주요기반시설을 목표로 한 자국의 ICT 범죄행위를 경감하기 위한 외국의 요청에 적극 대응할 것 등

3) 사이버현안실장은 사이버보안 등 각종 사이버 문제 해결, 외교정책의 전문가여야 함

뉴저지 주지사, 망중립성 유지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2018. 2. 5.)

필립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연방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폐기안에 반발해, 주 정부기관에 망중립성 원칙을 준수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2018. 2. 5.)

▶ 개요

- 2월 5일, 필립 머피(Philip Murphy) 뉴저지 주지사가 정부기관과 거래하는 주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망중립성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 이로써 뉴저지는 뉴욕과 몬태나에 이어 세 번째로 망중립성 유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주가 됨¹⁾
- 한편, 망중립성 폐기에 관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 자유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 최종 규칙》은 2월 22일 연방관보에 고시되어 60일 후 확정·시행될 예정임
 - 이에,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주 정부와 민주당은 망중립성 폐기를 무효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전국 23개 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들은 망중립성 폐기안이 연방관보에 고시된 직후 연방항소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으며, 상원에서 지난 1월 망중립성 폐기안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됨

▶ 주요내용

- 뉴저지주 재무부 산하 구매자산국을 비롯한 모든 주 정부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망중립성 원칙을 준수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만 구매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뉴저지주의 모든 소비자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무해한 디바이스를 차단하거나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행위

1) 이후 하와이와 버몬트도 망중립성 유지 행정명령에 서명함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유료 서비스에 우선권을 주는 행위
-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나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디바이스 제공자의 자유 및 사용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행위
- o 또한 망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뉴저지 주내 소비자들에게 네트워크 관리 관행 및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성능과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o 구매자산국은 법무공공안전부와 협의해 2018년 3월 1일까지 본 행정명령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법무공공안전부 산하 소비자보호국은 행정명령에 따른 책임 수행에 필요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야 함
- o 본 행정명령의 어떤 내용도 연방법이나 주법에 우선하지 않음

▶ 전망

- o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폐기안을 시행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연방관보 고시를 완료하면서 반대 진영에서 소송과 무효화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데다 양원 통과 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은 희박해, 소송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임
- 한편, 망중립성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주들은 주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한해 망중립성 원칙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연방통신위원회와 충돌 없이 망중립성 유지의 효과를 일정 부분 누릴 수 있을 전망

※ Reference

- <http://thehill.com/policy/technology/372409-new-jersey-governor-signs-net-neutrality-order>
- <http://nj.gov/infobank/eo/056murphy/pdf/EO-9.pdf>
- <https://www.sfchronicle.com/business/article/FCC-publishes-net-neutrality-repeal-in-Federal-12633694.php>
- <https://www.engadget.com/2018/02/22/23-attorneys-general-challenge-fcc-net-neutrality-repeal/>
-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720180SB46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이버침해사고 및 취약성 공개 지침 승인 (2018. 2. 2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사이버침해사고 및 취약성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는 것과 이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내부자가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발표 (2018. 2. 21.)

▶ 개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상장 기업들의 사이버 취약성 및 해킹 사례 공개와 관련된 지침¹⁾을 만장일치로 승인
 - 동 지침은 주식시장 상장 기업들이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것을 강조
 - 또한 침해사고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증권업법²⁾에 저촉된다는 점을 명시
 -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을 명시함
- 증권거래위원회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은 이번 지침이 기업 보안과 관련된 명확하고 강력한 지침을 담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보다 제대로 된 기업정보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상장 기업들은 증권업법 하의 기업 정보 공개 의무로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내 기업 가치 향상 측면에서라도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자체 감독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주요내용

- 기업은 기업 내에서 발생한 해킹이나 취약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증권업법 하의 '사기금지 규정(Antifraud Rule)'에 저촉될 수 있음

1) 정식 명칭 : 상장기업 사이버보안 공개에 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성명과 지침(Commission Statement and Guidance on Public Company Cybersecurity Disclosures)

2) 미국 연방 증권업법(Federal Securities Laws)은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통칭한 일반 명칭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사이버침해사고의 발생 빈도, 범위 및 피해 비용 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장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이버보안 위협과 사고 내용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재무제표나 각종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 또한 기업들은 현재 직접적인 사이버공격을 받고 있지 않았더라도 잠재적 위협 가능성이 있는 사항도 함께 공개해야 함
- o 기업의 사이버보안 위협과 침해사고 사실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직원이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도 불법 내부자 거래(insider trade)³⁾로 간주⁴⁾
- o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해 내부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라 할지라도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사실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다만 기업의 사이버보안 취약성이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시스템, 관련 네트워크 및 장비 등의 상세 기술 자료들은 비공개 처리 할 수 있음

▶ 시사점

- o 최근 미국의 기업 최고경영진들을 중심으로 불거진 기업 내부 보안 취약성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주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의 성격을 담고 있음

※ Reference

<https://www.cyberscoop.com/sec-breach-disclosure-guidance/>

<https://www.sec.gov/rules/interp/2018/33-10459.pdf>

<https://www.forbes.com/sites/tedknutson/2018/02/21/insider-trading-can-pose-cybersecurity-risks-says-sec-chair-clayton/#461f785e7327>

3) 특정 기업의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

4) Intel의 경우 2017년 6월 자사 CPU 칩에서 치명적인 보안 기술상의 결함이 발견된 이후 6개월가량 일반인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해 온 사실이 적발되었음

영국 정부, 디지털 헌장 발표 (2018. 1. 25.)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사이버안전과 디지털 경제 진흥을 목표로 한 《디지털 헌장》을 발표함 (2018. 1. 25.)

▶ 개요

-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디지털 헌장》(Digital Charter)을 발표하고 영국이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안전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영국 보수당 정부는 2017년 6월 여왕의 개원 연설¹⁾을 통해 처음 《디지털 헌장》의 수립 계획을 밝히고, 영국을 디지털 창업과 육성을 위한 최고의 지역이자 온라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인터넷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결합되어 경제 성장과 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사이버폭력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낳고 있어, 영국 정부는 《디지털 헌장》 제정을 통해 온라인상의 규범과 규칙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여 관련 문제의 해결과 디지털 경제 번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디지털 헌장》의 6가지 기본 원칙은 ▲인터넷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접근 가능할 것 ▲온라인상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인정할 것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적절히 사용할 것 ▲어린이의 사이버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 ▲온라인상의 인권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보호할 것 ▲신기술에 의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할 것임
- 《디지털 헌장》의 실행계획은 기술 변화와 함께 진화하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계획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 IT 기업들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활발한 생태계를 구축
 - 유해한 콘텐츠와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산업계와 협력해 기술적 해결책 개발을 독려함

1) 영국 여왕은 매년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집권당의 당해 주요 국정계획을 대독하며, 국회는 여왕 연설에 대한 표결을 통해 집권당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온라인 플랫폼들이 자사 사이트에서 공유하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정부가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 하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취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조치를 고찰함
 - 데이터는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데이터 기반으로 내려지는 결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데이터의 활용과 통제, 공유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함
 - 정치적 또는 개인적, 금전적 이유로 대중을 오도하는 거짓정보의 확산을 차단함
 -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조직과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업과 기타 조직을 지원함
- 정부는 IT 업계와 일반 기업, 시민사회와 협력해 온라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을 취할 것임
- 시민들이 최대한 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일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IT 업계의 창의력을 활용해 특정 기술적 과제에 대한 해답을 도출함
 - 온라인 표준과 규범을 수립하기 위해 법제 개정 등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고려함
 - 정부 보유 데이터의 활용 및 조달 정책 등을 통해 정부가 선선수범함
 - 영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동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관계를 구축함

▶ 시사점

-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디지털 세계·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이버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디지털 사회 구축에 위한 기본 규범으로서 《디지털 헌장》을 마련해 발표하였음

※ Reference

<http://www.computerweekly.com/news/252433849/Government-sets-out-further-details-of-Digital-Charter>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igital-charter/digital-charter>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ms-speech-at-davos-2018-25-january>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NIS 지침 의견 수렴 최종 보고서 발표 (2018. 1. 29.)

영국 정부는 《NIS 지침》 의견 수렴에 관한 최종보고서 발간을 통해 사회기반서비스의 범위와 사이버보안 및 시스템 장애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사항에 관해 명시함 (2018. 1. 29.)

▶ 개요

-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가 《NIS 지침》(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Directive)¹⁾에 관한 의견 수렴 최종 결과보고서²⁾를 발표함
 - 영국 정부는 2017년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했으며, 총 358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음
 - 동 보고서의 내용은 의무사항으로 영국 내 사회기반서비스(essential service) 분야 운영 사업자들의 사이버 위협과 시스템 장애에 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성되었음

▶ 주요내용

- 사회기반서비스의 범위에는 ▲에너지(전력/석유/가스) ▲디지털 인프라³⁾ ▲의료 ▲교통(항공/해상/철도/육로) 등이 해당됨
- 《NIS 지침》 실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사이버보안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NCSC)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전문 자문 및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함

1) EU집행위원회는 2016년 7월 《NIS 지침》을 채택했으며, 같은 해 8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에 착수. 《NIS 지침》 발효에 따라 EU 전 회원국들은 발효 시점 기준 21개월(2018년 5월) 이내에 각 국가별로 국내법 형편에 맞게 《NIS 지침》을 반영하고 시행해야 함.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EU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 EU 회원국들과의 지속적인 경제·산업적 관계 유지를 위해 《NIS 지침》 준수를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였음

2) 최종결과보고서 명칭 :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 지침에 관한 자문(Consultation on the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Directive)

3) 최상위 도메인 레지스트리(등록된 도메인명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기관), DNS(Domain Name System) 서비스 제공, Internet Exchange Point(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간의 인터넷 트래픽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한 인터넷 연동 서비스) 사업 등

해외 입법 동향 **영국**

- 또한, 보고서에 기재된 각 지역별(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로 할당된 보안 전담 기관 간의 협력을 추진키로 함
- 사회기반서비스 지원 네트워크와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보안 위기를 이해·평가·관리하기 위해 조직 구조, 정책 및 프로세스⁴⁾의 적절성을 확보
 - 사이버 공격·시스템 장애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보안 수단을 확보
 -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 방어 체계의 유효성을 확보
 - 사회기반서비스 제공 시 사이버침해사고의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
- 각 지역별로 할당된 보안 전담 기관들은 사이버 공격 피해 발생 시 사회기반서비스 운영사업자로부터 피해 이용자 수, 사고의 지속성 및 지리적인 확산 등의 지표를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침해사고의 피해 범위를 파악하고 파급 효과를 예상하여야 함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검색 엔진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사들 역시 《NIS 지침》 실행 의무를 지니며, 일정 시간 동안 디지털 서비스제공자에게 《NIS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을 부여
- 사회기반서비스 운영사업자의 사이버보안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대해 충분한 대응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시 최대 1,700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추징

▶ 시사점

- EU의 《NIS 지침》 준수를 위해 마련한 영국의 《NIS 지침》 최종보고서는 사회기반 인프라와 조직의 사이버보안 관리 기준과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적임

※ Reference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onsultation-on-the-security-of-network-and-information-systems-directive>

4) 사회기반서비스 제공 조직은 해당 조직의 거버넌스, 리스크관리, 자산관리 및 공급망 등의 각 영역에서 적절한 보안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

인터넷 법제동향

Vol. 125 (February 2018)



| 발 행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Tel. 1544-5118

| 기획 · 편집 | 법제연구팀

| 발간 · 배포 | www.kisa.or.kr

- | |
|--|
| <p>※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p> <p>※ 본 자료 내용의 무단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
|--|